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기후위기 적응 정책 강화를 위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물산업 육성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리를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체계 운영 인력 1명(연구사 1명), 온실가스 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대응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시행체계 강화를 위하여 유역환경청에 인력 2명(7급 2명), 지방환경청에 인력 1명(7급 1),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에 섬진강수계 수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인력 18명(5급 2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관리운영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고, 통합환경관리 이행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을 위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의 협업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며,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시행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환경 분야 전문성과 정책결정역량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직렬을 연구직에서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신기후체제대응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기후전략과·기후경제과·국제협력과·신기후체제대응팀·기후변화국제협력팀·녹색전환정책과·녹색산업혁신과·녹색기술개발과·통합허가제도과·환경교육팀·대기환경정책과·대기미래전략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과를 두며, 기후전략과장·기후경제과장·국제협력과장·녹색전환정책과장·녹색산업혁신과장·녹색기술개발과장·통합허가제도과장”을 “기후전략과·기후경제과·기후적응과·국제협력과·기후변화국제협력팀·녹색전환정책과·녹색산업혁신과·녹색기술개발과·통합허가제도과·환경교육팀·대기환경정책과·대기미래전략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과를 두며, 기후전략과장·기후경제과장·기후적응과장·국제협력과장·녹색전환정책과장·녹색산업혁신과장·녹색기술개발과장·통합허가제도과장”으로, “신기후체제대응팀장·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을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12.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

- 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을 “기후적응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 및 사후관리

1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1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12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환경책임투자 정책 수립·운영 및 녹색금융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 중 “물정책총괄과·물이용기획과·토양지하수과·물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수생태보전과·생활하수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관리과”를 “물정책총괄과·물이용기획과·토양지하수과·물환경정책과·수질수생태과·생활하수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관리과장”을 “수질수생태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30호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2.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3. 생물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수변생태구역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25.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
26.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7.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의 승인 및 시행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28.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하천·호소구역에 대한 농작물 경작권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0.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제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 및 친환경 하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을 “일반직 공무원·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를 “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연환경과장 및 환경평가과장”을 “자연환경과장·환경평가과장 및 자원

순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2.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4.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순환자원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항 중 “유역계획과·재정계획과·상수원관리과·수질총량관리과”를 “유역계획과·상수원관리과·수질총량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협의·조정
12.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14.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5.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협약에 관한 사항

1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2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하천오염행위”를 “수질오염행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민지원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1.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의2제4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제31조의3제2항제5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폐기물매립지”를 “폐기물매립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처리업체에 대한”을 “처리업체 동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의3.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8의4. 순환자원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의5.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3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별표 6 중 총계 “630”을 “632”로 하고, 일반직계 “624”를 “62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7”을 “9”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2”를 “2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30”을 “632”로 하고, 일반직 계 “624”를 “62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5”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7”을 “9”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97”을 각각 “400”으로 하고,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9”를 “30”으로 하며, 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7”을 “8”로 하고, 공업연구사·농

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40”을 “38”로 하며,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46”을 “48”로 하고, 공업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8”을 “19”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를 각각 “33”으로 하고,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3”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8”을 각각 “741”로 하고, 행정주사 “25”를 “24”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32”를 “129”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00”을 “101”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74”를 “72”로 하고, 행정서기보 “23”을 “22”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35”를 “34”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9”를 각각 “742”로 하고, 행정주사 “25”를 “24”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35”를 “132”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02”를 “103”으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73”을 “71”로 하고, 행정서기보 “23”을 “22”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30”을 “29”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52”를 각각 “349”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61”을 “59”로 하며, 행정주사보 “10”을 “9”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1”을 “52”로 하며, 전기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54”를 각각 “351”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64”를 “62”로 하며, 행정주사보 “10”을 “9”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7”을 “58”로 하며, 전기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7”을 각각 “68”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을 “7”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8”을 각각 “69”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을 “7”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9”를 각각 “172”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4”로 하며,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 및 시설주사 “6”을 각각 “7”로 하고, 방송통신주사보 “20”을 “19”로 하며,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6”을 “27”로 한다.

별표 16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9”를 각각 “172”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4”로 하며,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 및 시설주사 “6”을 각각 “7”로 하고, 방송통신주사보 “20”을 “19”로 하며,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6”을 “27”로 한다.

별표 17 중 총 계 및 일반직계 “23”을 각각 “22”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심사관) “7”을 “6”

으로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67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3조 관련)

1. 제4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2

2. 제4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3. 제4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4. 제4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공업연구원 · 농업연구원 · 보건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1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
5. 제4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
6. 제43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공업연구원 · 농업연구원 · 보건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1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① ~ ⑤ (생 략)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기후탄소정책실에 기후전략</u> <u>과 · 기후경제과 · 국제협력과 ·</u> <u>신기후체제대응팀 · 기후변화국</u> <u>제협력팀 · 녹색전환정책과 · 녹</u> <u>색산업혁신과 · 녹색기술개발과</u> <u>· 통합허가제도과 · 환경교육팀</u> <u>· 대기환경정책과 · 대기미래전</u> <u>략과 · 대기관리과 · 교통환경과</u> <u>를 두며, 기후전략과장 · 기후경</u> <u>제과장 · 국제협력과장 · 녹색전</u> <u>환정책과장 · 녹색산업혁신과장</u> <u>· 녹색기술개발과장 · 통합허가</u> <u>제도과장은</u>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대기환경 정책과장 · 대기미래전략과장 · 대기관리과장 · 교통환경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u>신기후체</u> <u>제대응팀장 · 기후변화국제협력</u> <u>팀장</u> 및 <u>환경교육팀장</u> 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 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	⑥ ----- <u>기후전략과</u> <u>· 기후경제과 · 기후적응과 · 국</u> <u>제협력과 · 기후변화국제협력팀</u> <u>· 녹색전환정책과 · 녹색산업혁</u> <u>신과 · 녹색기술개발과 · 통합허</u> <u>가제도과 · 환경교육팀 · 대기환</u> <u>경정책과 · 대기미래전략과 · 대</u> <u>기관리과 · 교통환경과를</u> 두며, <u>기후전략과장 · 기후경제과장 ·</u> <u>기후적응과장 · 국제협력과장 ·</u> <u>녹색전환정책과장 · 녹색산업혁</u> <u>신과장 · 녹색기술개발과장 · 통</u> <u>합허가제도과장</u> ----- ----- ----- ----- ----- ----- ----- <u>기후변화</u> <u>국제협력팀장</u> ----- ----- ----- -----

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 11. (생략)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⑨ (생략)

⑩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다음

-----.

⑦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8. ~ 11. (현행과 같음)

⑧ -----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11.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12.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⑨ 기후적응과장-----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⑪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u><신설></u> 16. 삭제 17. · 18. (생략) ⑬ ~ ⑳ (생략)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⑤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9. <u>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u> 10. <u>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 및 사후관리</u> 11. <u>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⑪ ----- -----. 1. ~ 5. (현행과 같음) 6. <u>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 · 협력 · 지원에 관한 사항</u> ⑫ ----- -----.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u>환경책임투자 정책 수립 · 운영 및 녹색금융에 관한 사항</u> 17. · 18. (현행과 같음) ⑬ ~ ⑳ (현행과 같음)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	--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정책총괄과 · 물이용기획과 · 토양지하수과 · 물환경정책과 · 수질관리과 · 수생태보전과 · 생활하수과 · 수자원정책과 · 하천계획과 · 수자원관리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⑩ (생략)

⑪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⑥ ----- 물정책총괄과 · 물이용기획과 · 토양지하수과 · 물환경정책과 · 수질수생태과 · 생활하수과 · 수자원정책과 · 하천계획과 · 수자원관리과-----

-----.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수질수생태과장-----
-----.

1. ~ 20. (현행과 같음)

21.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2.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3. 생물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수변생태구역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25.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

26.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⑫ 수생태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의 조성
에 관한 사항

2.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변녹지조성 등 수변구역의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호소구역에 대한 농작
물 경작권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및 석호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6. 생물측정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의 승
인 및 시행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28.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하천·호소구역에 대한 농
작물 경작권고제도 운영에 관
한 사항

30.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
방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u>사항</u> 7. <u>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에</u> <u>관한 사항</u> 8. <u>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u> <u>에 관한 사항</u> 9. <u>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수립</u> <u>에 관한 사항</u> 10. <u>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의 승</u> <u>인 및 시행지역 지원에 관한</u> <u>사항</u> 11. <u>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u> <u>방법 권고 등에 관한 사항</u> ⑬ · ⑭ (생략) ⑮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21. <u>친환경 하천관리에 관한 지</u> <u>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u> 22. ~ 24. (생략) ⑯ · ⑰ (생략)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① 국립 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u>공업연구관·보건연</u> <u>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u> 또는 <u>환경연구관</u>으로 보하되,	⑬ · ⑭ (현행과 같음) ⑮ ----- -----. 1. ~ 20. (현행과 같음) 21. <u>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 및</u> <u>친환경 하천관리 기본계획의</u> <u>수립 등에 관한 사항</u> 22. ~ 24. (현행과 같음) ⑯ · ⑰ (현행과 같음)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① ---- ----- ----- <u>일반직 공무원·공업</u> <u>연구관·보건연구관·임업연구</u> <u>관·기상연구관</u> -----
---	---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27조(환경관리국) ① (생략)

② 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 · 자연환경과 · 환경평가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③ 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 및 환경평가과장은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환경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환경관리과 · 자연환경과 · 환경평가과 · 자원순환과-----.

③ -----

----- 자연환경과장 · 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

-----.

④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u>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 조사 및 사후관리</u>	<u><삭 제></u>
7. <u>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u>	<u><삭 제></u>
8. <u>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u>	<u><삭 제></u>
9.·10. (생략)	9.·10. (현행과 같음)
11. <u>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u>	<u><삭 제></u>
12. ~ 15. 삭제	
16. ~ 17. (생략)	16. ~ 17.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삭제	
<u><신 설></u>	⑧ <u>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u>
	2. <u>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u>
	3. <u>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u>
	4. <u>지정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u>

⑧ (생 략) 제28조(유역관리국) ① (생 략) ② 유역관리국에 <u>유역계획과 · 재정계획과 · 상수원관리과 · 수질총량관리과</u> 및 수생태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u>주민지원사업 승인에 관한</u>	<u>처리업체 등의 지도 · 점검에 관한 사항</u> 5. <u>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 6. <u>폐기물 수출 · 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u> 7. <u>순환자원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8. <u>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 · 정산 및 집행관리</u> 9. <u>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28조(유역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u>유역계획과 · 상수원관리과 · 수질총량관리과</u> ----- ----- ----- -----. ③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사항

6.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7. (생략)

8.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 10.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1. (생략)

④ 재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
립 시행

2. 수계관리기금의 사업계획 협

<삭제>

7. (현행과 같음)

<삭제>

9. · 10. (현행과 같음)

11.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협의 · 조정

12.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성과평
가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
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14.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5.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
정 · 협의에 관한 사항

1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 징수
에 관한 사항

17. (현행 제11호와 같음)

<삭제>

<u>의 · 조정에 관한 사항</u> 3. <u>수계관리기금사업의 성과평</u> <u>가에 관한 사항</u> 4. <u>수계관리기금의 출납 및 결</u> <u>산 · 평가에 관한 사항</u> 5. <u>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u> <u>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u> <u>사항</u> 6. <u>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u> <u>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u> 7. <u>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u> <u>· 협의에 관한 사항</u> 8. <u>물이용부담금의 부과 · 징수</u> <u>에 관한 사항</u> ⑤ · ⑥ (생략) ⑦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u> <u>부 · 정산 및 집행관리</u> 5. · 6. (생략) 7. <u>하천오염 행위 감시 · 단속</u> <u>에 관한 사항</u> 8. · 9. (생략) <u><신 설></u>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 6. (현행과 같음) 7. <u>수질오염 행위</u> ----- ----- 8. · 9. (현행과 같음) 10. <u>주민지원사업 승인에 관한</u> <u>사항</u>
---	--

<신 설>

<신 설>

제28조의2(하천국) ① ~ ③ (생략)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신 설>

11. (생략)

⑤ ~ ⑧ (생략)

제31조의3(기획평가국) ① (생략)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한다.

1. ~ 4의4. (생략)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
조사 및 사후관리

7.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11.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
에 관한 사항

제28조의2(하천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0. (현행과 같음)

11. 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기획평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의4. (현행과 같음)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6. 폐기물매립시설 -----

7.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 -----
8.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8. ----- <u>처리업체 등의</u> ----- -----
<u><신 설></u>	<u>8의2. 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8의3.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8의4. 순환자원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8의5.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9. ~ 17. (생략)	9. ~ 1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한시정원) ①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제43조(한시정원) ①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
②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② ----- ----- -----

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두며, 별표 21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③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행기반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④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살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⑤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 2023년 2월 28일 -----

③ -----

----- 2024년 12월 31일 -----

④ -----

----- 2024년 12월 31일 -----

⑤ -----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
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환경청
에 둔다.

<신 설>

환경부령 제675호 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신기후체제대응팀
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이 분장하
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2024년 12월 31일-----

-----.

⑥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
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
른 한시정원을 국립환경과학원
에 둔다.

환경부령 제675호 환경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
부터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이 분
장하는 사항은 기후전략과장이
분장한다.

신·구정원대비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30</u>	• <u>632</u>	+2
일반직계	• • <u>624</u>	• • <u>626</u>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 <u>2</u>	• • <u>3</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 • <u>7</u>	• • <u>9</u>	+2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2</u>	<u>21</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30</u>	• <u>632</u>	+2
일반직 계	• • <u>624</u>	• • <u>626</u>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 <u>4</u>	• • <u>5</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 • <u>7</u>	• • <u>9</u>	+2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1</u>	<u>20</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97</u>	<u>400</u>	+3
일반직 계	<u>397</u>	<u>400</u>	+3
·	·	·	
·	·	·	
공업연구원 · 농업연구원 · 기상 연구원 · 보건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u>29</u>	<u>30</u>	+1
·	·	·	
·	·	·	
공업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u>7</u>	<u>8</u>	+1
·	·	·	
·	·	·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보건 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u>40</u>	<u>38</u>	-2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34</u>	• <u>33</u>	-1
일반직 계	<u>34</u>	<u>33</u>	-1
•	•	•	
•	•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4</u>	<u>3</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748</u>		<u>741</u>	-7	
일반직 계			<u>748</u>		<u>741</u>	-7	
	.		.		.		
	.		.		.		
행정주사			<u>25</u>		<u>24</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132</u>		<u>129</u>	-3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100</u>		<u>101</u>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74</u>	<u>72</u>	-2
·	·	·	
·	·	·	
행정서기보	<u>23</u>	<u>22</u>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35</u>	<u>34</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749</u>		<u>742</u>		-7
일반직 계			<u>749</u>		<u>742</u>		-7
	.		.		.		
	.		.		.		
행정주사			<u>25</u>		<u>24</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135</u>		<u>132</u>		-3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102</u>		<u>103</u>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73</u>	<u>71</u>	-2
·	·	·	
·	·	·	
행정서기보	<u>23</u>	<u>22</u>	-1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30</u>	<u>29</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52	349	-3
일반직 계	352	349	-3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61	59	-2
·	·	·	
·	·	·	
행정주사보	10	9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1	52	+1
·	·	·	
·	·	·	
전기운영서기보	2	1	-1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54	351	-3
일반직 계	354	351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64	62	-2
행정주사보	10	9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7	58	+1
전기운영서기보	2	1	-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5]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7	68	+1
일반직 계	67	68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	7	+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8</u>	• <u>69</u>	+1
일반직 계	<u>68</u>	<u>69</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6</u>	<u>7</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69	172	+3
일반직 계	169	172	+3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환경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4	+1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	6	7	+1
·	·	·	
·	·	·	
시설주사	6	7	+1
·	·	·	
·	·	·	
방송통신주사보	20	19	-1
·	·	·	
·	·	·	

공 업 연 구 사 · 환 경 연 구 사 또는 시설연구사	<u>26</u>	<u>27</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3]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69	172	+3
일반직 계	169	172	+3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환경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4	+1
·	·	·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	6	7	+1
·	·	·	
·	·	·	
시설주사	6	7	+1
·	·	·	
·	·	·	
방송통신주사보	20	19	-1
·	·	·	
·	·	·	

공 업 연 구 사 · 환 경 연 구 사 또는 시설연구사	<u>26</u>	<u>27</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3</u>	<u>22</u>	-1
일반직계	<u>23</u>	<u>22</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심사관)	<u>7</u>	<u>6</u>	-1
·	·	·	
·	·	·	